

조사위원회 규정

목 차

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	1
제 2 조(목적)	1
제 3 조(기능)	1
제 4 조(구성)	1
제 5 조(위원의 구성)	1
제 6 조(위원의 직무)	1
제 7 조(위원의 임기)	1
제 8 조(위원의 해촉)	1
제 9 조(회의소집)	2
제10조(회의운영)	2
제11조(의결정족수)	2
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	2
제13조(수당·활동비·여비지급 등)	2
제14조(제척 및 회피)	2
제15조(비밀누설금지)	2
제16조(규정 적용)	2
부칙	2

조사위원회 규정

제 정 2018. 8. 1.

제1조(근거 및 명칭)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, 그 명칭은 조사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조사위원회는 정관 제5조에 따라 도핑방지를 위한 정보활동 및 조사에 관하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조사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여 자문한다.

1. 도핑제보시스템 또는 전용전자우편으로부터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한 사항
2. 사법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에 대한 사항
3. 타 도핑방지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에 대한 사항
4.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
5. 기타 도핑관련 정보활동 및 조사에 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선임) ①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률전문가
2. 경찰, 세관 등 사법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자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자
4.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자
5. 혈액 또는 소변 전문가
6. 약사 자격증 보유자
7. 기타 도핑관련 정보활동 및 조사에 관심이 있는 자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

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회의소집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하며 안건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참석 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운영) 위원장이 참석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며 제5조3항 각호의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결정족수) ① 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②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서면결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12조(긴급한 업무처리)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선 시행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·활동비·여비지급 등) ① 위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급여성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서면결의에 의한 심의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직무 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비용 등의 실비는 위원회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누설금지) ① 위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·유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규정 적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8.8.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